



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문제 및 규제 개선 현황

양승현 연구위원

-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적 불명확성이 지적되어 왔음
 - (의료행위)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도 의료행위의 법적 정의나 구체적 판단지침이 없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사업자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
 - (특별이익 제공금지)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건강관리 관련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
 - (부수업무·자회사 범위) 보험업이 아닌 부수업무나 자회사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령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
 - (질병정보 수집·이용) 개인의 질병정보는 법령상 정해진 목적 외로 수집·이용할 수 없다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정으로 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건강정보 수집·이용에 어려움이 존재함

-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(2017년)이 보험회사가 제공가능한 편익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해 지침을 제공하였으나, 의료행위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음
 - 올해 5월 ‘의료행위’와 비의료인이 영위할 수 있는 ‘건강관리서비스’ 간의 구분에 관한 판단지침을 담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어 의료법 위반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

- 위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·공표함
 - (i)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인정하고, (ii)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3만 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을 허용하며, (iii) 건강·질병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 안내·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 등을 밝힘

- 그동안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업자의 법·규제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·경감됨에 따라 향후 활발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기대됨
 - 장래 출시될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현 시점에서 모두 파악하여 일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음
 -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법적 위험을 제거하고, 축적된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판단지침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

1. 검토 배경



- 지난 5월 ‘의료행위’와 ‘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’를 구분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담은 “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(1차)”(보건복지부)(이하, “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”)이 발간됨
 -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·출시할 때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
- 보험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령화 및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·상품 활성화가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¹⁾²⁾임
 - 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, 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‘의료행위’ 판단의 불명확성 외에도 특별이익 제공금지 등 보험업에 특유한 규제 적용 판단상의 어려움이 거론되어 왔음
 - 금융감독당국은 2017년 “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·판매 가이드라인”(이하, “건강증진형상품 가이드라인”)을 마련하였으나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효익은 제한적이었음
- 금융감독당국과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간을 계기로 지난 7월 “건강증진형 보험상품·서비스 활성화 방안”⁴⁾(이하, “활성화 방안”)을 발표함
 - 혁신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·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천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힘
- 본고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적 문제를 (i) 의료행위 판단기준, (ii) 특별이익 제공금지, (iii) 부수업무 내지 자회사 업무 영위, (iv)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로 각 나누어 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

1) 2019년 7월 현재 국내 출시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에는 걷기 등 건강활동 입력 시 보험료의 10%까지 할인하는 상품 등 생명보험 총 4종,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코칭서비스 및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등 손해보험 총 9종이 있음(금융위원회·보건복지부·금융감독원(2019), 「건강증진형 보험상품·서비스 활성화 방안」, p. 9를 참조함)

2) 경향비즈(2019. 7. 3), “규제 완화로 ‘반전 드라마’ 준비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”(http://biz.khan.co.kr/khan_art_view.html?artid =201907031814001)을 참조함

3) 질병·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에 관해 건강관리 기기 구매비용, 보험료 할인, 보험금 증액 등 제공가능한 편의 열거, 편의제공기준의 기초서류 명시 등 관련 지침을 제시함

4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9. 7. 2), “최종구 금융위원장,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·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”를 참조함

2.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



■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⁵⁾임

- 그럼에도 의료법상 “의료행위”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⁶⁾한 관계로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
 - 의료행위라 함은 “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, 검안, 처방,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”를 말함(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도5964 판결)
- 건강관리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⁷⁾이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원하는 사업자는 의료법 위반 위험에 노출된 상황임
 - 금번 의료행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정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

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, 비의료인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예시하여 구체적 판단지침을 제공함

- (정의) 건강 유지·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·악화 방지를 목적으로, 위대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(의료적 판단 제외)된 상담·교육·훈련·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
- (의료행위 판단기준)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충족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함

〈표 1〉 의료행위 판단기준

구분	판단기준	세부 판단기준
① 행위의 근거	의학적 전문지식 필요	- 의료인이 아니면 취득·판단이 어려운 정보 및 지식에 근거한 행위인지 - 단순히 ‘질환·의료정보’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정보의 해석 및 판단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 고려 -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침·기준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출처 등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

5)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)으로 의율되며 영리목적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됨(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제5조)

6)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“의료인이 하는 의료·조산·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(이하, “의료행위”라 한다)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

구분	판단기준	세부 판단기준
② 행위의 양태	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·처방·처치 수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특정한 병명·병상 등을 확인하여 주는 것(‘잠정적’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료기관 내원을 권유하는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) - 질환·장애·상해 등을 치유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계획된 체계적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함(일상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증진행위는 간접적 행위에 불과)
③ 행위의 효과 및 부작용	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체적합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침습적인 행위 - 질환보유자에게 직접치료 목적으로(환자의 질환을 인지하고 해당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)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- 의료인의 처방·판단·의뢰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범위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 우려 낮음

- (제공가능 서비스) 개인의 **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·점검 및 비의료적 상담·조언**은 비의료 건강관리기관에서 제공 가능함
 - (건강정보의 확인·점검) 건강검진 결과 단순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한 자료수집,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혈압, 혈당 등 건강정보·지표의 자가측정 및 모니터링 등이 해당됨
 - (비의료적 상담·조언) 객관적 정보의 제공 및 분석,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, 상담·교육 및 조언이 이에 해당함
- 가이드라인은 나아가 사업자 등의 구체적 판단을 돕기 위해 (i)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, (ii) 비만관리 서비스, (iii) 고혈압·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에 관해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각 예시하고, (iv) 기타 제공 가능한 서비스 사례를 열거하고 있음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되어 가이드라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, 유권해석 절차를 통해 신속한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도모함
 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(연장 가능)하여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며,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함

3. 특별이익 제공금지

-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관리기기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(제98조)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됨
 -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·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⁷⁾ 대상임

- 과당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훼손되거나 보험계약자 간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
- 제98조는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⁸⁾하고 있지만 판례⁹⁾ 등에 비추어 볼 때 열거된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 폭넓게 특별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음
 -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한 보험상품을 개발·판매하는 데 법적 위험 요소로 작용함
-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제공가능한 편익의 종류 및 지급기준, 기초서류 명시 등 관련 지침을 제시함
 - 보험회사는 (i)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보전, (ii) 보험료 할인·환급, (iii) 보험가입금액 상향·보험금 증액, (iv)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, (v) 서비스 관련 포인트·쿠폰을 지급할 수 있음(제5조)
 - (iv) 및 (v)는 해당 상품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위험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(동조③)
 - 원칙적으로 모든 편익은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위험 감소에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함(제6조)
 -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·판매 촉진에 한계로 지적되었음
-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상의 제공편익을 확대하여 건강관리기기(웨어러블 기기 등) 자체의 지급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임
 -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, 보험회사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(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금액 한도 설정)
 -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한 후 공고를 거쳐 최종 시행(2019년 11월경) 예정임

4. 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무 영위



-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직접 보험상품으로 구성·판매하는 방식 외에도 부수업무 영위 방식 내지 자회사 설립·지분투자 방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

7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보험업법 제202조 제1호)

8) ① 최초 1년 보험료의 10% 내지 3만 원 이상의 금품 제공(제98조 제1항 제1호), ② 기초서류에 정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·수수료 지급(제2호), ③ 기초서류보다 높은 보험금의 지급약속(제3호), ④ 보험료 대납(제4호) 내지 이자 대납(제5호 및 제6호) 등

9)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두8323, 대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4다34929 판결을 참조 바람

-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부수(附隨)하는 업무를 하려면 보험업법상 신고가 필요¹⁰⁾함
 -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본업인 보험업 외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
 - 한편,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(15% 이상 지분취득)할 수 있는 회사의 업종은 보험업법령에 열거된 것으로 제한되고, 업종에 따라 사전 승인 내지 신고를 요¹¹⁾함
 -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업무는 “건강·장묘·장기간병·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·분석·조언 업무”가 열거(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2호)되어 있음
 - 현재 보험회사 등이 개발·제공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
- 지난 7월 발표된 “활성화 방안”에 따르면,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
- 보험회사 질의 시 적극적 유권해석 또는 사전 신고 시 신속수리한다는 방침임(2019년 하반기)
 -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·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 여부를 검토함(2020년 하반기)
- “활성화 방안”에는 자회사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겨져있음

-
- 10) 제11조의2(보험회사의 부수업무)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(附隨)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1.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
 2.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
 3.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
- 11) 제115조(자회사의 소유)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. 다만,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.
1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
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업
 3. 보험계약의 유지·해지·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
 4.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5. 개인정보보호



-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피보험자 등의 건강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¹²⁾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, “신용정보법”)상 질병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
 -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는 소정의 고지사항을 밝히고 별도 동의를 받으면 되나, 신용정보법상 질병 정보는 보험회사가 “보험업”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어 문제됨

신용정보법	신용정보법 시행령
제16조(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제한) ②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를 수집·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외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.	제13조(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제한) 법 제16조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각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 보험업법 」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

- “활성화 방안”은 보험회사의 건강·질병정보 이용범위를 보험업으로 한정된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건강관리서비스의 안내·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(2020년 중)
 - 다만,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험인수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에 활용하는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음

6. 결어



-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그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의료법 저촉위험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
 - 난점은 현 시점에서 향후 출시될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모두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음

12)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유전정보, 범죄경력 관련 정보 등(법 제23조①, 시행령 제18조 각호)을 말함

- 의료행위의 개념 자체도 고정 불변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,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임¹³⁾
- 가이드라인은 행위의 근거, 양태, 효과 등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, 판단이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처방안도 제시하고 있음
 - 유권해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개별 사안의 법적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, 중장기적으로 축적된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완으로 일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
- 이와 더불어 부수업무 범위 명확화, 신용정보법 개정 등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관련 규제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더욱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
- 장래 개발될 건강관리 관련 상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난점은 보험업 규제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앞으로 문제가 될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움
 -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권해석 절차 등을 통해 개별 사안의 법적 위험은 신속하게 해소하고, 사례 축적을 통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판단지침 보완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**kiri**

13) 대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 바람